

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(압류통지)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동물 보호법위반 과태료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고지서를 발송 및 압류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13일



- 다 음 -

- 공 고 명 :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(압류통지)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6. 08. 13. ~ 2026. 08. 28.(15일간)
-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- 송달내용

대상자	주소	부과내용	금액	납부기한	미송달 사유	비고
임*주	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동림로 30	과태료	과태료 금225,200원	2026. 08. 31.	수취인 불명	
대상자	주소	처분사유	압류재산	압류일자	반송 사유	

5. 유의사항

- 가. 상기 동물보호법 의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**행정처분(재산 압류등)**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위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압류에

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문의처 :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 (☎ 063-650-5638)